Yeosu
Web Contents

2024년 10월 12일 17시 39분

목차

목차 2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기저귀 지원 3
조제분유 지원 3
지원기준 3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3
지원결정 4
신청방법 4
신청안내 4
구비서류 4

신생아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영양제 정장제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둘째아 이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셋째아 이상 가구(조제분유 지원불가)
- 사실혼관계 및 조손가족의 경우도 지원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만원) 지원

지원기준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신청일 이후부터 사용가능하며 포인트로 지급 건강보험료 자격 변동 시 사전 보건소로 신고하여 서비스 중단 요청
- 주의) 신청 전 출생아 등록(수급자격 등록) 및 국민행복카드(기저기 바우처)등록 완료 후 신청
- 신청일 기준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영아의 형제자매 모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
- 보유 시 대상 영아가 차상위 자격을 아직 보유하진 않더라도 지원가능(단, 대상 영아 자격 취득 후 증명서 제출)

※ 카드 바우처 등록방법 : 임신 시 발급 된 진료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 기저귀바우처 사용 신청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지원결정

담당자가 신청인의 보유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자격확인용 구비서류 생략)
※ 예외) 보유자격 미확인 시, 신청인 자격확인용 구비서류 제출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안내

-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가능(영아 부모 신청 원칙)
- 반드시 출생아가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수급자 자격이 되어있어야 함

구비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작성)

2 조제분유 지원신청할 경우, 희귀질환자 면역억제제투여 산모질병 증빙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사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다문화가정 또는 부부 등본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4

COPYRIGHT © YEOSU.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여수시